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89
----------	-------

발의연월일 : 2026. 8. 14.

발 의 자 : 박성훈 · 안상훈 · 김은혜
김성원 · 엄태영 · 박수영
이인선 · 임이자 · 김장겸
윤재옥 · 박충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 등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공사·공단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만 제한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유연한 제재가 불가능하여 기업의 경제활동 및 공정한 경쟁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발주기관별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같음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4조의2제4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4항 중 “공사는”을 “공사의 사장은”으로, “해칠 것”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다)”로, “판단되는 자”를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다)-----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 -----.
<u><단서 신설></u>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u><신 설></u>	1.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

<u><신 설></u> ⑤ · ⑥ (생 략)	<u>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 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 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u> <u>2.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 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 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 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 한다)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u> ⑤ · ⑥ (현행과 같음)
--	--